

# 행정자치부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이동식 화장실 구매 설치 수의계약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사천시

관 련 자 사천시 ○○과(전 ○○○○과) 지방○○○○(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5. 7. 10.부터 2016. 6. 30까지 ○○○○과에서 근무하면서 “○○○○○○○○ 음악분수대 이동식 화장실 구매” 업무를 추진하였다.

사천시에서는 2015. 9. 10. “○○○○○○○○ 음악분수대 이동식 화장실 구매” 계약(계약금액 150,000천원)을 ○○○○○○○○○(대표 ○○○)과 수의계약 방법으로 경남지방조달청에 의뢰하여 체결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사목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특허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의 경우 예를 들어 ‘결로방지 및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적용’한 제품, ‘겨울철 동파방지 및 실내 환경오염 기능을 적용’한 제품, ‘저비용 관리 및 에너지 절약하는 기능을 적용’한 제품 등 각 업체별로 일부기능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이동식 화장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각각의 기능별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위 관급자재를 제조하는 업체가 다수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이동식 화장실 구매·설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방서에 위 특허사항을 그대로 포함시키지 않고 비슷한 기능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 등 적절한 대체품이 있으므로 구매에 필요한 일반사양(이동식 화장실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결정한 후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정하여 일반경쟁 방식으로 구매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15. 7. 24. 유사제품을 비교하면서 위 업체의 특허제품은 “동절기 동파방지 문제점과 상수부 등 배관 누수 점검보호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사후 관리 및 유지보수에 용이”하다는 사유로 이에 대한 대체·대용품 유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위 업체의 제품을 선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더구나 2015. 8. 13. 경남지방조달청에서 “최근 감사원에서 일부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제품 간에 기능이나 성능 등이 유사하여 대체·대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나라장터(G2B) 종합쇼핑몰 등에 등록된 동일(유사)한 제품을 참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대체·대용품의 유무를 면밀히 재검토해 달라”는 대체·대용품 재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같은 해 8. 17. 형식적인 검토결과 동일(유사)한 제품이 없다고 회신하는 등 위 특허제품에 대한 대체·대용품 유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특정업체가 계약을 수주하게 되어 이동식 화장실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맞게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특정업체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의계약은 관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